

「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위한 「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허청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지원규모 : 88명 내외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기간	기업부담금
일반형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73명 내외	최대 15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8개월 내외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IP전략형	IP(지식재산)를 보유한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15명 내외			

*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예비)재창업자 40% 내외 선발 예정

** 청년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39세 이하 재창업자로 1983. 2. 1. 이후 출생자(1983. 2. 1. 출생자 포함)

*** 일반형, IP전략형 간 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은 재창업자 직접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일반형, IP전략형) 직접 또는 간접 지원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① 일반형, 또는 ② IP전략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 세부자격 >

구분	내용
① 일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3.1.31.) 전('23.1.30.)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0.1.31.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공고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 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② IP전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자” 자격요건은 “① 일반형”과 같음 ○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전용실시권 포함) ○ 출원건은 해당하지 않음 (등록건만 인정)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여야 함 * 단, 개인사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단,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 → 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예비)재창업자도 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일까지 ‘채무조정 완료자’에 한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체결 완료된 “채무조정합의서”는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협약)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채무조정제도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 - 5500)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순번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1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2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3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 평가 결과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 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시행령 제99조의 6)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既)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창업중심대학(실험실 특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비대면, 신산업),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사업 협약 잔여기간 3개월 미만 시 신청 가능 (23.5.31.)

⑤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⑦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일반유희주점업(56211), 무도유희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세부 지원내용

□ **공통지원** (일반형 및 IP전략형)

- **(사업화 자금)** 최대 15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 후 8개월 이내 (~'23.12월))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 **총사업비(100%) 구성**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5%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既)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A+B)	정부지원금 (A)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B)	
		현금	현물
200백만원	150백만원	10백만원	40백만원
100%	75%	5%	20%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투자IR,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주관기관별 상이)

< 지원예시 및 주관기관 >

구분	지원내용
민간연계	· 민간 대기업 등과 연계한 재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성과촉진	· 매출·고용·투자 등 재창업자 성과향상 전문(전시, 판로, 투자 IR 등) 프로그램
네트워킹	· 재창업자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 전문가들과의 소통 (멘토·멘티, 기술컨설팅, 경영자문 등)
기타	· 재창업자 성과창출을 위한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일반형	지정형	교육형
·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성남산업진흥원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원광대학교	· 한국발명진흥회	· (주)렛츠 · 씨엔티테크(주) · (유)제피러스랩

□ IP전략형

「IP전략형 프로그램」(특허청: IP제품혁신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평가 및 선정기준 등은 일반형과 내용이 다르오니 반드시 IP전략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개요)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사업화,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을 통한 IP기반 강소기업 육성

< 진행절차 및 지원내용(요약) >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지원
요건검토	성실경영 평가	선정평가 최종선정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한국발명진흥회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P제품혁신 (한국발명진흥회)		

- (지원내용) IP제품화 및 사업화 자금 등 연계지원 (붙임파일 확인)

구분		지원규모 / 기간	지원내용
사업명	세부과제		
①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150백만원 / 8개월	▶ IP전략형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 되는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②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컨설팅)	신제품기획	50백만원 / 8개월	▶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 및 이에 대한 시장수요조사, 제품사용 시나리오, MVP수준 APP, 테스트 목업 등의 검증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개발형)	20백만원 / 6개월	▶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 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렌더링·설계·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협업)은 최종선정 시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개발형·개선형) 총 4개 중 1개 유형만 지원

** 추가 후속지원: ① 투자유치, 전시회 등 지원, ②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우선 구매 추천사업,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유형 I) 신청 시 가점 부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조달청 혁신시제품 추천(유형 II)

①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및 프로그램·인프라 지원 (일반형과 동일)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IP제품혁신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비용으로 우선 활용될 수 있음

②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지원

* 대상제품 및 과업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과제는 기업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 **(신제품기획)** IP 분석정보 활용, 고객 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특허전략의 제안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 과제 기획 → ② 고객인사이트 분석 → ③ 타분야 기술 도출 → ④ 융합 제품 기획 → ⑤ 검증

○ **(문제해결)** 기업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 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인 해결안 도출 및 검증 지원

*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안 도출

** 진행절차: ① 과제 기획 → ② 제품문제 정의 → ③ 해결안 도출 → ④ 검증

○ **(제품고도화)**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 과제 기획 → ② 디자인 컨셉도출 → ③ 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 ④ 제품디자인 개발 → ⑤ 검증

□ **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대응자금)은 지원사업별*로 각각 부담

* "IP전략형" 기업부담금은 한국발명진흥회, "재도전성공패키지" 기업부담금은 창업진흥원으로 각각 부담

< 기업부담금 기준표(예시) >

IP 제품혁신 지원사업					+	재도전 성공패키지
매출액 (20년 기준)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총 25%
기업부담율	총 10%	총 15%	총 30%	총 40%		총 25%
현금	5% 이상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5% 이상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20% 이하

4. 사업 신청

□ 신청 ·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3. 1. 31.(화) ~ 2. 28.(화)

- K-Startup 접수기간 : 2023. 2. 15.(수) ~ 2. 28.(화), 15:00 까지

* 신청자 주소 및 사업자 주소에 상관없이 지역별 주관기관을 선택해서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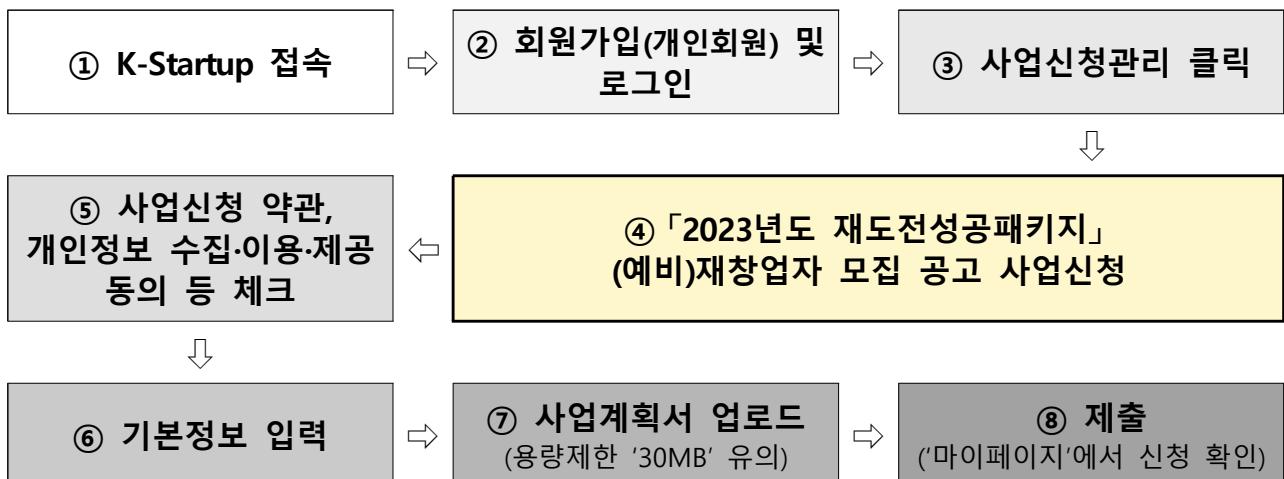
** 주관기관 명단(지원 프로그램)은 2월 초 본 사업공고에 첨부파일로 안내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1) 사업 신청은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2)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하여 신청하며, 신청한 각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선정
- 3)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4)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5) 접수마감일 15: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5: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 (개인정보 동의 등 완료 후,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유예 시간)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허용
* 유예시간 17:00 마감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선정
신청자격 검토, 성실경영 평가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가점 등 반영)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금 안내
전담 /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성실경영 여부에 대하여 선정평가와 병행하여 진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성실경영 평가" 탈락 시 미선정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외) 자격에 대한 요건검토는 상시적으로 실시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

** 세부 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평가 결과별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 1회 신청 가능

① **(요건검토)** (예비)재창업자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사업계획 평가* →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 공통서류, 가점 및 실적 등의 내용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평가

③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병행 평가 → 최종선정

< 유형별 평가항목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일반형	서류·발표	문제인식 (Problem)	· ① 폐업(실패) 원인 분석, ② 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③ 재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
		실현가능성 (Solution)	· ① 재창업 아이템의 개발방안, ② 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③ 재창업 아이템 현황 및 차별성, 기술혁신성
		성장가능성 (Scale-Up)	· ①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②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③ 재창업 아이템 사업화 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
		팀 구성 (Team)	· ① 재창업자 의지 및 팀원의 보유역량 (내부), ② 외부 역량 확보 및 계획의 적정성 (외부)
IP전략형	서류	정량	기업현황 · ① 일반현황, ② 기술개발 역량, ③ 인증 및 수상 지식재산활용 · ① 지식재산 등록현황, ② 직무발명 보상현황
		정성	· ① 지원의 적합성, ② 사업화 가능성
	발표	· ① 제품·기술 우수성, ② 기업역량, ③ 제품시장성, ④ 과제적합성, ⑤ 지원기대효과	

④ (최종선정) 지원대상 및 정부지원금 확정

* 선정자 대상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 및 재창업자 사업비 신청 한도, 평가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비 배정 (차등 지원)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구분	내용		
서류평가 면제 ①~③	①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 진출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2022 New Startup! 데모데이" 우수기업 선정자		
서류평가 가점 ①~⑥ 항목별 각 1점 부여 (가점 총 5점 한도)	①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예비)재창업자		
	구분	지정기간	세부내용
	고용위기지역	'23.01.01.~'23.12.31.	· 경상남도 거제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1.05.29.~'23.05.28.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21.09.09.~'23.09.08.	· 전남(1):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21.12.30.~'23.12.29.	· 충남(1):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18.03.21.~'23.03.20.	· 전남(2): 담양일반산업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20.02.27.~'25.02.26.	· 강원(2):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일반산업단지, · 전북(2): 김제지평선일반사업단지,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 전남(6): 나주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강진산업단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	
- 예비재창업자: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기준 - 재창업자(개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점) 소재지 기준 * 고용위기지역 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7호(2022.12.29.)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2호(2021.5.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28호(2022.3.31.)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관련: 중소기업부 고시 제2018-18호(2018.3.21.) 중소기업부 고시 제2020-21호(2020.2.27.)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관련: 중소기업부 고시 제2021-75호(2021.10.29.) 중소기업부 고시 제2021-93호(2021.12.30.)			
②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③ '22년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④ '22년도 재도전 데모데이(IR) 수상자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⑤ '22년도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수료증' 제출 시 가점 인정 ⑥ '22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온·오프라인 포함 10시간 교육 이수자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은 **본 사업 신청자 기준**이며, 사업 공고일 전('23.1.30.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요건검토 단계에서 탈락 시 해당사항 없음)

6. 선정자 의무 및 유의사항

□ 선정자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본 사업 「세부 관리 기준」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최종 선정자 대상 지침·기준 별도 안내)
- 선정자는 기한 내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 및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예비” 재창업자는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자료요청, 점검,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 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재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미유지 시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음

* 지침 및 기준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징수

-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제3자 부당개입*의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재 등의 제한이 취해질 수 있음
 - * 제3자 부당개입: 통상의 자문, 컨설팅 외에 기업평가에 직접 관여하거나 기관 사칭, 지원 결정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동 사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또는 사업계획서 내용 허위 기재,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주요 업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주요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재도전성공패키지 「세부관리기준」에 따르며, 사업신청·선정 이후 관련 지침·기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 신청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과정 중 과거 모든 폐업기업의 실질기업주 여부 확인을 위한 전담·주관기관의 자료제출(폐업사실 증명원 등)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 다수 폐업자의 경우 모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누락, 미제출, 비협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제출서류 간 기재 내용(개인, 법인, 예비 등)이 상이할 경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우선으로 함

7.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주관기관 사업설명회

- (일정) 2023. 2. 8.(수) ~ 2. 24.(금)

* 사업설명회 관련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신청 주관기관에 문의

8.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구분	기관명	연락처
신청·접수 및 시스템(K-Startup)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25, 7626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044-410-1761, 1766

□ IP전략형(특허청 협업)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구분	연락처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관련	02-3459-2946, 2812, 2933, 2796
사업운영 관련	02-3459-2937, 2860, 2789, 2798, 2928

붙임 1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공구·기구, 비품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신규 또는 기고용)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여비	· 창업기업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9조~제48조(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등) 참고, 비목별 세부설명 및 집행기준 필히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붙임 2

(채무조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역	센터명	주소
서울 (7)	중앙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신문사) 6층
	관악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광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5층
	노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 빌딩 3층
	양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5, 3층(라임타워)
	서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빌딩 9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 인천 (13)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15층
	계양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2층(삼환1빌딩)
	수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KT&G코스모수원빌딩 8층
	의정부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16(의정부동 141-3) 한화생명빌딩 4층
	고양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안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성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분당 예미지 빌딩 2층
	안양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0 7층
	부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평택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신대동), 2층
	구리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김포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 2층(김포고용센터건물 2층)
	하남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센터 3층
부산 대구 울산 경상 (13)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사상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울산	·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2층
	동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8, 하나은행 3층
	서대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구, 교보생명빌딩) 8층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빌딩 3층
	양산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135, 퍼스트조양빌딩 5층 505호
	거제	·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 거제고용복지+센터 3층
	진주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진주고용복지+센터 7층(장대동)
	안동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태화동 715-3) 안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경주	·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96 경주 고용복지+센터 3층
	포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31 동양BD 6층(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지역	센터명	주소
강원 (4)	강릉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원주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춘천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45 2층
	속초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 속초고용복지+센터
대전 충청 (6)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대흥동 493-4번지)
	천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청주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미래에셋대우빌딩 4층
	충주	·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9(봉방동 15-2) 세일빌딩 2층
	홍성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2층 204호 (신경리 558, 센트럴타워)
	당진	· 충청남도 당진시 천변1길 224-14(대덕동 1689) 신화빌딩 2층
광주 전라 (8)	광주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구, 삼성생명 빌딩) 6층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1층 채무힐링센터
	북광주	·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전주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3층 (금암동, 세광타워)
	익산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순천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목포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군산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조촌동 752-4) 군산고용복지+센터 3층
제주 (2)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서귀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제1청사 1층 종합민원실

* 상담시간 등 세부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의 (1600-5500, <https://www.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